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및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

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

◎ **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**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**국내 유입 방지를** 위해 **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** 중요

◎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**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**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**시스템에 직접 등록**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당부

* www.kahis.go.kr : KAHIS (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축 · 운영하고 있는 **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**)
(관련근거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3 및 시행령 제15조의2)
* eminwon.qia.go.kr :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

◎ 아울러,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

○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**각각 300만 원 이하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됨

※ 축산관계자의 범위

1. **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* –** 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
2. **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* –** 고용계약 체결 유 · 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3. **수의사 –** 동물병원 개설자 · 고용인, 수의 · 축산 공무원, 공중병역수의사, 학계 · 축산단체 종사 수의사(수의학 · 축산학 · 동물자원학 전공 교수 · 강사 · 대학원생), 축산단체 · 동물원 ·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
4. **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**
5. **가축방역사 –** 가축방역사 및 수의 · 축산 분야 직원
6. **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–** 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

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
7. 사료를 판매하는 자 – 사료제조업 ·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
8. 가축분뇨를 수집 · 운반하는 자

9. 가축시장의 종사자 –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·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

10. 원유를 수집 · 운반하는 자 –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

11. 도축장의 종사자

* 동거가족 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)

축산관계자 정보 KAHIS 자진등록 방법

1 KAHIS 홈페이지(www.kahis.go.kr) 접속

2 검역본부(eminwon.qia.go.kr) 접속

3 "개인정보처리방침" 동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

4 "축산관계자 등록" 후 저장

필수선택 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축산관계자유형, 핸드폰 번호, 국적, 국내주소)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

※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: 032-740-2999